

2025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 공모계획 공고

「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5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. 31.

세종특별자치시장

□ '24년 공모 계획

사업명	횟수	1회차	2회차	비고
예비사회적기업 지정	2회	3월 중	8월 중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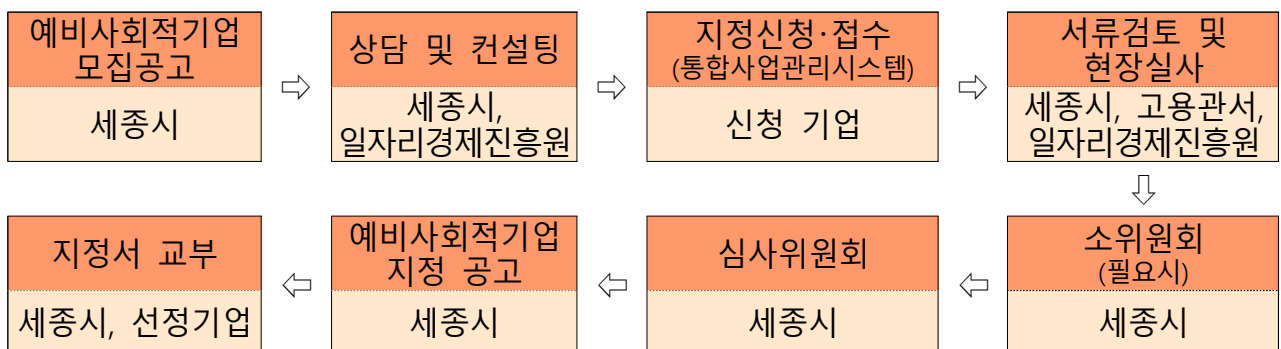
※ 상기 일정은 업무 여건 및 수요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지원 대상 및 내용

사업명	대상	내용
예비사회적기업 지정	예비사회적기업 희망기업	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(지정일로부터 ~ 3년)

※ 지정 및 지원 요건 등은 차후 공모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□ 추진 절차



□ 문의처 및 상담

-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 담당자(☎044-300-4833)
-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(☎044-251-3219)

1 지정 개요

- 지정근거
 -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,
 - 「2025년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
- 사업목적
 -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,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☞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

-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,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

☞ 사회적기업

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

- 사업명 : 세종특별자치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
-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3년간
 - 단,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,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
- 지원내용
 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
 -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등 관련 지원사업 참여
 -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영컨설팅,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

2 신청 자격

1 조직형태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 - 1.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,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
 - 2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
 - 가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
 - 나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 - 다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 - 라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 - 마.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 - 바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 - ※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(어)조합법인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(어)업회사법인 등
 - 3. 그 밖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 - 사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·미술관
 - 아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

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

-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(공고일)부터 1년간(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) 신청제한
-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·취소되거나,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·취소·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 - *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
 - ▲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
 - ▲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
 - ▲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
 - ▲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, 사업내용, 임원·근로자 등 구성원,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

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
 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
 -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
 - ※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(실적기간 : 3개월)
- 단,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함
 - ※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으로 판단,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,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

《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》

- ① 사회서비스제공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 -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
- ② 일자리제공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 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
- ③ 지역사회공헌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
 -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(지역취약계층)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
 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
 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, 마케팅,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
- ④ 혼합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 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
- ⑤ 기타(창의·혁신)형: 그 밖에 조직의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
 -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

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
-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·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
 - ※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,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,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
- 단,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
 - ※ 영업활동 수행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
- 사업기반(사업장, 근로자 등)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

④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
 -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
 - ※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
 -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 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

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
-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,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
 -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
 -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(위반사항 해소 포함)로 판단
-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(예비)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

6 지정제한
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 제한
 - 제한기간 횡수 기산방법 : 2017.1.1. 신청 분부터 적용, 지역형·부처형 합산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, (예비)사회적기업 인·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·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

《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 》

-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
-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
-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
-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, 사업내용, 임원·근로자 등 구성원,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

-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,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

3 심사내용 및 신청 절차

1 심사내용

- ①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부
- ②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 형태로 운영 여부

- ▷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로 갖추어야 함
- ▷ 모법인으로부터 분리·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
- ▷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
 -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 및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

- ③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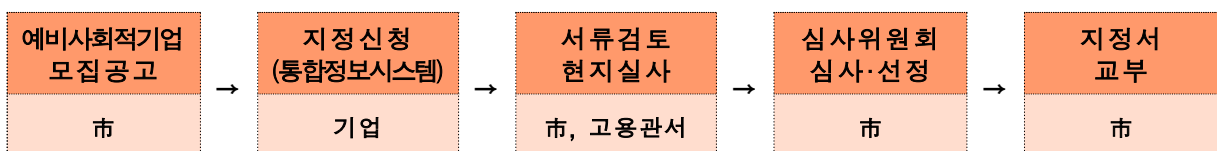
- ▷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
- ▷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,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"주된 목적"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

- ④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

2 신청절차

-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- 신청방법 : 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입력 및 등록
 - ※ 시스템 문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포털 ☎1661-4006

- 선정절차



4 지정 후 유의사항

1 지정반납

-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,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정을 반납할 수 있음

2 지정취소
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,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
-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
-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
 -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,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
 - 폐업,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(국세청 자료 등으로 확인)

3 사업보고서 제출

- 사업보고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, 전체 사회적·경제적 성과분석 등에 활용
 -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
-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시정지시 처분
 - 사업보고서 제출 시까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

5 신청 서류

-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
 -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, 시스템 입력
-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(지침 별지 제2호 서식)
- ③ 조직형태 확인서류(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)
-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지침 별지 제2호의 2~제2호의6서식,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)
- ⑤ 유급근로자 명부(지침 별지 제2호의7서식,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)
 - 통합관리시스템 입력,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, 근로계약서, 주민등록등본(지정유형이 '지역사회공헌형^㉔' 경우) 제출
- ⑥ 사업자등록증명, 재무제표 등 영업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실적기간 :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(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)
 - 반드시 통합관리시스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제출
- ⑦ 정관·규약 등(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)
 - 정관, 규약은 반드시 '공증'을 받아야 인정
 - * 주식회사, 유한회사, 합자조합,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회사법인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협동조합, 「민법」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
- ⑧ 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(지침 별지 제6호서식)
- ⑨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(지침 별지 제2호의8서식)
- ⑩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등 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증
 - 지방자치단체,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(5시간 이상)
 -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
- ⑪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(해당기업)